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97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0319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실손의료 공제금 전자청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안 제58조의2 등)	3

I.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0319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26.

다. 회 부 일 : 2024. 8. 27.

2.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은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공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 나. 공제조합은 실손의료공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의3제4항 및 제96조제8호 신설).

4. 검토의견

가. 실손의료 공제금 전자청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안 제5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96조(벌칙) -----

현행	개정안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u>

개정안은 현행법 제54조1)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중 건설공제조합이 운용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의 실손의료공제비를 공제계약자 등이 청구할 경우,

공제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전자적 형태로 건설공제조합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자시스템을 건설공제조합이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56조2)에서는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 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설립·인가한 공제조합 3개³⁾ 중 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만이 단체상해 및 실손의료비보장 공제상품 등을 운영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⁵⁾)중에 있음.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⁶⁾에서는 공제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

3) 현행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공제조합은 종합건설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및 기계설비공사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3개임.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이 최근 3년간 지급한 평균 실손의료비 금액은 약 25억원임.

5) (참고자료 참조)

6) 「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실손의료공제금 청구와 관련한 조합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험업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보험금 청구 처리 방식이 공제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상품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자와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공제상품 가입자와의 보험금 청구방식에서의 편의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의 개정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동일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의료비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제조합 공제상품 가입자의 실손의료공제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국토교통부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제조합의 실손의료비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8조의3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보험업법」에 따라 구축되고 있는 전산시스템(「보험업법」 제102조의7, 참고자료 참조)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위탁받아 구축·운영하고 있는 보험개발원과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의 선행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4년 10월 24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개정안의 시행일이 경과한 점과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시행일을 적정한 기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참고자료>

< 「보험업법」 (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 주요내용 >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